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4.

제안자: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수정이유

통계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작성자료의 범위를 수집가능한 정보로 한정하고 정보제공자의 응답의무를 규정함.

수정주요내용

‘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·재생에너지 사용량’을 ‘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산업단지의 신·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’으로 수정함.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
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자”를 “사용자(이하 “정보제공자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산업부문”을 “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(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말한다)”로, “사용량”을 “사용량 또는 보급량”으로 한다.

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일부개정법률안
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07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1. 29.

발 의 자 : 박지혜·김문수·이건태
박희승·이훈기·김 윤
채현일·임미애·강준현
민형배·황명선·황정아
이광희·이재강·송재봉
최민희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·재생에너지 수요·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·작성·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, 기업부설연구소,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%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,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,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·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·작성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정보제공자의 응답의무를 규정하고, ‘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·재생에너지 사용량’을 ‘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산업단지의 신·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’으로 수정함(안 제25조제1항).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필요한 국내외 신·재생에너지의 수요·공급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항에”로, “사용자”를 “사용자(이하 “정보제공자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국내외 신·재생에너지의 수요·공급
2.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(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1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말한다) 및 산업단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)의 신·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관련 통계의 작성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<u>필요한 국내외 신·재생에너지의 수요·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·작성·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·설치자·<u>사용자</u>에게 요구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</u>	제25조(관련 통계의 작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음</u> 각 <u>호의 사항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용자</u> (이하 “정보제공자”라 한다)--- ----- <u>. 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 <u>1. 국내외 신·재생에너지의 수요·공급</u> <u>2.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(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말한다) 및 산업단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</u>
<신 설>	
<신 설>	

② (생 략)	<u>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</u> <u>다)의 신·재생에너지 사용량</u> <u>또는 보급량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

